김포시 국내·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

의 안 번 호 제3412호

제출년월일 2024. 2. 23. 제 출 자 김 포 시 장

1. 심사경과

○ 본 안건은 2024년 2월 23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

○ 김포시 국내·외 도시 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교류협력 등에 필요한 기준, 사후관리, 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정의, 다른 조례와의 관계, 책무(안 제1조 ~ 4조)
- 나. 친선결연 등의 대상 및 기준, 체결(안 제5조 ~ 7조)
- 다. 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및 지원(안 제8조)
- 라. 친선결연 등의 취소, 의회의 동의(안 제9조 ~ 10조)

4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의 제정 이전에도 김포시는 국내·외 도시와 친선결연 등의 관계를 맺는 것이 가능했던바, 근거 조례의 제정을 통해 시 행정상 변경 또는 개선되는 사항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- 안 제10조 및 상위법 「지방자치법」에서 국외 도시와 친선결연 등을 체결, 변경, 취소하고자 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김포시의회는 시의 해외 교류·협력에 있어 법령 준수를 당부해야 할 것임.
- 안 제8조에서 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후 조례 시행 시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나 별도의 비용추계서가 제출되지 않아 해당 이유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, 「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에 따르면 비용추계 작성 제외 대상이라 하더라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

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됨.

*[참고] 「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10조(비용추계서 작성)

- ①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"법" 이라 한다) 제78조에 따라 시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 하는 의안을 발의한 경우 의안의 소관부서에서는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,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.
 - 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- ③ 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의 요인,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,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, 재원조달방안은 보조금·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, 지방세수입·세외수입 등 자체수입, 지방채발행, 기금, 공기업 특별회계 등 부분별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.